2025년 법무사 대비

[상법 조문별 기출지문 OX]

“ 기출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 됩니다.”

기출지문	정답

박문각 서울법학원 상법교수

법학박사 이상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한다.	(X)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적용한다.	(X)

[제3조]

*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상법을 적용한다.	(X)
*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O)

[제2장 상인]

[제4조]

*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X)
*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O)
* 영업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영업자금의 차입행위에 대해서도 상행위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된다.	(O)

*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전자인 명의자를 상인으로 본다.	(X)
*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X)
*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O)

[제5조]

*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변호사도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X)
* 이른바 전문직업인 중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X)
*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O)
* 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O)

[제6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O)

[제9조]

*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

*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O)
*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O)
*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 중의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재판상 소송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	(X)

[제11조]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주를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O)
*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해임할 수 있다.	(O)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제3자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인 경우, 영업주는 그러한	(O)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O)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를 한 경우라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X)
*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제12조]

*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O)
*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X)
*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제13조]

*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제14조]

*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X)
* 지점의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지는 사용인이므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X)
*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O)
*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으로 믿을 만한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O)
*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O)

[제15조]

*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O)
*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O)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 반드시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X)
* 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X)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에는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X)

[제16조]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17조]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O)
*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제4장 상호]

[제19조]

* 합명회사는 조합과 유사하므로 상호자유주의에 따라 상호에 합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X)

[제20조]

*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O)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제21조]

* 개인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마다 별도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 개의 영업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O)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O)

[제22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O)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O)/ (X)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X)

[제22조의2]

*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회사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제23조]

*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강학(講學)상 상호전용권이라	(O)

한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X)
* 상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를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한된다.	(X)
* 판례는 상법 제23조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X)
*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사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O)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동종 영업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X)
* 판례는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 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O)
*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어떤 상호가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O)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공법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O)
*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O)
*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X)
*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X)
*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O)
*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내의 영업이 아니더라도 명의차용자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X)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나,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X)
*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	(O)

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등기한 후에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호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자에게는 상호권의 득상(得喪)을 대항하지 못한다.	(X)
* 상호는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할 수 없다.	(X)
*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X)

[제26조]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O)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

*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개인상인은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상법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O)
*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X)

[제30조]

*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O)

[제32조]

*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제33조]

* 상인의 상업장부 보존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인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이다.	(O)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

*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O)
* 등기관은 상업등기의 신청을 검사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26조	(O)
*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O)
* 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 상업등기법 제31조	(X)

[제37조]

*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단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 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서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O)
*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O)
*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발생한다.	(O)
*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O)
*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
*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등기가 공고와 상위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X)
*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가 정하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의 공시력 부정	(X)

[제39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아여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제7장 영업양도]

[제41조]

*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O)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O)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X)
*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O)
*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X)
*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O)
*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O)
* 경업금지청구권은 부작위채권으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X)

[제42조]

*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O)
*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X)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O)
*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O)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상호의 양도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상호를 속용하는 당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O)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X)
*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 자체가 아닌 그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주식회사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구분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X)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라면, 영업양수인에게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당해 채권자가 선의라는 사실의 주장 . 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X)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O)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	(X)

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도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X)
* 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X)
* 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거래상 채무에 제한되므로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O)

[제44조]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의 채권자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	(O)

[제45조]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영업양도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X)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칙

[제46조]

* 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행위로 보는 이른바 '절대적 상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O)
*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는 상행위이나, 영업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O)
* 상법 제46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O)
*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	(O)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X)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인이 한 어떤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O)
* 상행위로의 추정은 새로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적용되고, 기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O)
*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O)

[제48조]

*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X)

[제49조]

*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O)

[제50조]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X)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O)

[제51조]

* 상법상 대화자 간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제53조]

*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은 신속히 승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O)
*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제54조]

*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상인과 비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O)
* 상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뿐만 아니라,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X)
*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X)
*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에 준하는 채무가 아님	(O)
*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도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O)

[제55조]

* 상인이 타인에게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특약이 없는 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X)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O)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X)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56조]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O)

[제57조]

*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O)
*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채무가 상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증인은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을 갖는다.	(X)

[제58조]

* 상법상의 상사유치권(제58조)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O)
*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X)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X)
*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X)
*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이면 충분하고, 민사유치권은 쌍방이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성립한다.	(X)
*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O)
*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X)
*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은 개별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X)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O)
*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O)
* 보통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	(O)

되어 있다.	
*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일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X)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O)
*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행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O)
*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규정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상사유치권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O)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	(O)
*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O)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O)
* 일반 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다.	(X)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는 물론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제59조]

* 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O)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O)
* 상사질권에서 민사질권과 달리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상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한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O)
*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O)
*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O)
*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X)

[제61조]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X)

[제62조]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O)
* 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O)
*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X)
*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한 책임의 경감 내지 배제가 가능하다.	(O)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O)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O)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음식점을 운영하던 乙이 종래부터 겸영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甲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 신축에 사용하였다면, 乙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甲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O)
*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채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O)
*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	(X)

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 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O)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X)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제2장 매매]

[제67조]

* 상법상 매매에 관한 특칙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 즉,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는 매매에 적용된다.	(O)

*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O)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바로 경매할 수 있다.	(O)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경매할 수 있다.	(O)
*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X)
*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O)

[제68조]

*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O)
* 일정한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O)

[제69조]

*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O)
*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	(X)

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6개월 후라도 하자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상법 제69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O)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X)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X)
*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지만,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도급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O)
*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된다.	(X)
* 수량부족이나 물건의 하자 외에 매매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들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그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O)
*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3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O)

.

[제70조]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X)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O)

[제3장 상호계산]

[제72조]

*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 상법상의 상호계산은 상인과 비상인간에는 약정할 수 없다.	(X)
* 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상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O)
* 상호계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시 거래관계는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장래 상시 거래관계가 성립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상호계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O)
* 상호계산을 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거래상의 것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생기지 않는 채권도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X)

[제73조]

*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는 없다.	(X)

[제74조]

*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O)
* 상호계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르되,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로 한다.	(O)
* 상호계산에 있어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X)

[제75조]

*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O)

[제76조]

*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는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 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X)
* 채권자는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 계산서 승인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77조]

*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

*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O)
* 익명조합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인 이상 자연인이든 회사이든 조합이든 상관이 없다.	(O)
* 당사자의 일방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영업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익명조합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O)
*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익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 비율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	(O)

[제79조]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O)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민사법적으로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지만, 판례는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당초 약정과 달리 임의로 자기 용도에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X)

[제81조]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전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X)

[제82조]

*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O)
*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X)
* 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X)

[제84조]

*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익명조합계약은 종료되나, 익명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약이 종료되는자에 대하여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O)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O)
* 영업자의 사망이나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O)

[제85조]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O)

[제86조]

*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O)
* 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재산'에 한하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이다.	(O)
*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영업자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영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O)

[제4장의2 합자조합]

[제86조의2]

*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86조의5]

*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X)

[제86조의6]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O)

[제86조의7]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O)

[제5장 대리상]

[제87조]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X)
* 어떤 자가 제조자.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가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O)

[제89조]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O)
* 대리상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대리상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본인은 이를 본인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본인은 대리상에게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지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O)

[제90조]

* 대리상은 물건의 판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O)

[제91조]

* 대리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	(X)

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유치할 수 없다.	(X)

[제92조]

*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대리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92조의2]

*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O)
*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대리상이 보상청구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된다.	(O)
* 상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을 상법상 대리상 아닌 자에 대하여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X)

[제92조의3]

*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O)

[제6장 중개업]

[제93조]

* 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O)

[제94조]

* 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더라도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을 수 있다.	(X)

[제96조]

*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제98조]

* 상법 제98조에 의하여 중개인에 대하여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O)

[제99조]

*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상법 제99조에 의하여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뒤에 중개인이 당사자의 성명·상호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O)

[제100조]

* 중개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O)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

*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법 제113조에 기한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O)
*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O)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위탁매매인이 되지 못한다.	(X)
* 위탁매매인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지만, 대리상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이는 위탁매매인의 경우 특정한 상인을 보조하지만 대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X)

[제102조]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O)

[제103조]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O)
*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는 위탁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X)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다.	(O)

[제105조]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O)

[제106조]

*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X)
*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X)

[제107조]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O)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

[제109조]

*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O)

[제111조]

* 위탁매매인은 거래의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

*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X)
*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O)
*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O)

[제115조]

*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제116조]

* 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다.	(O)
*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O)
*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X)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없다.	(X)

[제119조]

*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O)
* 운송주선인은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O)

[제120조]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O)
*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수하인 등으로부터 운송물에 관한 보수나 운임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운송물은 수하인 등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O)
*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받지 않았다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O)

[제121조]

*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O)

[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제9장 운송업]

[제125조]

*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O)
*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O)

[제128조]

*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 화물상환증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O)

[제129조]

* 이른바 '보증도(保證渡)'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X)
*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	(O)

[제130조]

*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를 제외하고는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일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X)

[제131조]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X)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O)

[제133조]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제134조]

*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나머지 운임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미 지급받은 운임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X)
*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O)
*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그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O)

[제135조]

*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만 미치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O)
*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	(X)
*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O)

[제136조]

*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이 아닌 보통물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제137조]

*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O)

[제139조]

*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X)

[제140조]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 경우 송하인의 권리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수하인의 권리와 송하인의 권리가 병존한다.	(O)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O)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청구를 하였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하	(X)

기 전까지는 송하인이 운송물처분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막을 수 있다.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이 송하인에 갈음하여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송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X)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O)

[제141조]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O)

[제142조]

*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X)

[제146조]

*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O)

[제147조]

* 운송물이 전부멸실됨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X)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149조]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O)
*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X)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2조]

*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고객과의 계약관계 중 고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O)
*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명시적 임치계약이 있어야 한다.	(X)
*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5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과의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임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O)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고객'이라 함은 반드시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X)
*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는,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X)
*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이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O)

[제153조]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제154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수치한 물건에 관하여는 임치물을 고객에게 반환한 후 6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O)
*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O)

[제11장 창고업]

[제156조]

*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수령한 후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O)

[제157조]

* 창고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제158조]

* 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160조]

*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제161조]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제162조]

*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한 경우에는 전부를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X)

[제163조]

* 창고임치계약의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주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O)

[제166조]

* 상법 제166조 제1항은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X)
* 상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멸실"은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 멸실에는 주관적멸실도 포함된다.	(O)

[제167조]

*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전부 멸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X)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68조의2]

*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O)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O)
*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스이용자 병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을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 테블릿, 전자참관 등 하드웨어의 학습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전자장비 역시 금융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O)

[제168조의3]

*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O)
*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됨이 원칙이다.	(O)
*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 탈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도 면한다.	(X)
*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	(O)

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	(X)

[제168조의4]

*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금융리스업자를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X)
* 금율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급자에게 직접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X)

[제168조의5]

*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13장 가맹업]

[제168조의6]

* 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O)

[제168조의7]

*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	(O)

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68조의8]

*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제168조의9]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O)
* 가맹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X)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의 영업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다.	(X)

[제168조의10]

* 상법은 가맹업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X)

[제14장 채권매입업]

[제168조의11]

* 상법이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한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란 이른바 프랜차이즈(franchise) 영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X)

제3편 회사

[제1장 총칙]

[제169조]

* 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O)

<1인회사>

* 1인회사는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로서 상법 규정상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인적회사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말함	(X)
*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흠이 있어도 1인 주주가 참여하여 결의하면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어도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
*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
*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으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회사지배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되는 1인회사의 경우 회사와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인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 1인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O)
*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
*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O)

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X)
*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

<법인격부인론>

* 판례 중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다. ⇒ 형해화는 객관적 징표, 법인격 남용은 주관적 의도	(O)
*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정한다.	(X)
* 법인격남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은 박탈된다.	(X)
*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자회사간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다.	(O)
* 회사가 외형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한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O)

* 회사와 개인의 별개의 인격책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
*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제173조]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O)
*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제한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O)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O)
* 회사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법 및 상속법상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진다.	(X)
*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	(O)

[제174조]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O)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	(O)

[제176조]

*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는 한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X)
*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휴면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그 명칭과 유사한 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귀속과 등기절차 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회사가 위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것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O)

[제2장 합명회사]

[제178조]

*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될 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 2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X)

[제188조]

* 수 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X)

[제189조]

*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제190조]

* 합명회사의 경우 설립무효판결 또는 설립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상법상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X)

[제192조]

*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모두 등기하여야 한다.	(O)

[제193조]

*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X)

[제195조]

*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O)
*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제197조]

* 사원의 교체성이 상법상 모든 회사에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X)

[제198조]

*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합명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

[제200조]

*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O)

[제205조]

* 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O)
* 합명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 ⇒ 법원의 선고로도 가능	(X)
*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O)

[제207조]

* 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제212조]

*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O)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할 때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도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X)
* 합명회사 사원의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은 보충적이어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 채권자의 합명회사 사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X)
*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을 자산 총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X)

[제215조]

*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O)

[제217조]

*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퇴사로 인하여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할 수 없다.	(X)

[제234조]

* 합병절차가 종결되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서 합병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O)

[제242조]

*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다.	(O)
*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것만 가능하고,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X)

[제244조]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사원은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등기 이후에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X)

[제245조]

*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O)

[제246조]

*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제247조]

*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제251조]

* 합명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X)

[제252조]

*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O)

[제254조]

*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고,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이러한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각자가 할 수 있다.	(X)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

*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합자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다.	(O)

[제269조]

*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에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X)
*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O)

[제271조]

* 합명회사는 정관에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에 위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한다.	(O)
*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해야 한다.	(O)

[제272조]

* 합명회사의 사원은 금전이나 현물 외에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O)

[제273조]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O)
* 합자회사에서의 업무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만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O)

[제275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O)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X)
*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X)

[제276조]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O)

[제279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X)

[제283조]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O)

[제284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사망이나 성년후견개시는 당연퇴사사유에 해당한다.	(X)

[제286조]

*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도 필요로 한다.	(O)
*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X)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287조의3]

*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유한회사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O)

[제287조의4]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O)

[제287조의8]

*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O)

[제287조의9]

* 유한책임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O)

[제287조의11]

*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X)

[제287조의12]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X)
*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O)

[제287조의15]

*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O)

[제287조의18]

*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제287조의23]

* 유한책임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O)

[제287조의43]

*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X)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

*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는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X)

<설립중의 회사>

*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O)
*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이다.	(O)
*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O)
*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우선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었다가 특별한 이전행위가 없더라도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X)
* 설립중의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빌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이전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X)
*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설립을 추진 중 행한 불법행위라면, 해당 행위가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O)

[제289조]

*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X)
* 주식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O)
* 실제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참가하고 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O)
* 주식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O)
*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을 '상업', '서비스업', '공업'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X)
*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상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해야 한다.	(O)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O)

[제290조]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O)
* 상법은 회사설립 시 현물출자자의 자격을 발기인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X)
*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O)
*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다.	(O)
*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재산인수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한다.	(O)
* 상법 제290조 제3호가 재산인수를 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 정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	(O)

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현물출자의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291조]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X)

[제292조]

*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원칙적으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O)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정관의 효력은 발생한다.	(O)
* 정관은 원칙적으로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X)

[제295조]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O)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X)

[제298조]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O)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검사인의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O)

[제301조]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O)

[제302조]

* 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이다.	(O)
* 주식인수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의 일종으로서 상사소멸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X)

[제305조]

*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X)

<가장납입>

*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
*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O)

[제308조]

*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불필요하지만, 일부만을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하여야 한다.	(O)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인수된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O)

[제309조]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O)

[제314조]

*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각각 이를 변경할 수 있다.	(O)

[제317조]

*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발기설립의 경우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사설립시 그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O)
* 주식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함은 물론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O)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는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X)

[제318조]

*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O)

[제319조]

* 권리주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효력이 인정된다.	(X)

[제320조]

* 회사 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O)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면 주식인수의 주식청약서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이 제한되고, 그 때부터 2년 내에 한하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제321조]

*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주식인수인을 새로이 모집하여야 한다.	(X)
*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O)

[제322조]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그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 발기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324조]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O)

[제326조]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	(O)
* 회사의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O)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

[제327조]

*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O)

[제328조]

* 주식회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X)
* 물적 회사로서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회사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O)
*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주식회사에 설립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 설립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X)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X)
*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O)
* 설립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주식회사에서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이사 또는 감사도 다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제2절 주식과 주주]

[제329조의2]

* 주권의 분할과 병합은 주식의 분할과 병합과는 다르다.	(O)
*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X)
*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X)
* 주식의 분할은 신주권을 교부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X)

[제332조]

*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O)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X)
*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O)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X)
* 실제 출자자가,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지위는 실제출자자가 취득한다.	(O)
*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제333조]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O)

[제335조]

<주식양도 제한>

*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X)
* 주주가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O)
*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X)
* 원칙적으로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주간의 합의로 주식의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정은 당사자간에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	(O)
*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O)
*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O)
*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정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X)
*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O)
*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부담한다.	(X)
*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O)
*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절대적 교체인 입사 . 퇴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O)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금지되지만,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O)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O)
* 주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양수인은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O)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O)
*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O)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될 수 있다.	(O)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O)*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되나,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X)

[제335조의2]

* 주식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의 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335조의7]

* 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O)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O)

[제336조]

*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O)
*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O)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X)

[제337조]

*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O)
* 주식의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X)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O)
* 주식이 양도되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의 복구 없이도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X)
*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만약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X)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O)
*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 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X)
*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X)
*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O)
*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X)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주권 없이 주식을 양수한 자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X)
* 명의개서를 마치면 무권리자라도 주주명부의 기재가 있는 동안 주주가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긴다.	(X)
*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의 통지를 한 것만 가지고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잇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X)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O)
*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O)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O)
*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그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복본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기명주식에 대한 등록질의 효력이 있다.	(O)
*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주주명부의 복본을 작성하거나 그 주주명부의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제338조]

*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은 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	(X)
*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는 항상 목적물을 환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담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X)

[제340조의2]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O)
* 50%의 주식을 소유한 A의 경영 잘못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의 남편 C가 경영을 맡게 되었고 이후 3년 만에 회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C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X)
* 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X)
* 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피용자에 한해 부여할 수 있다.	(X)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O)

[제340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O)
*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O)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한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일부 변경을 승인받지 않는 한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다.	(X)

[제340조의4]

*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D는 주식매수선택권을 E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O)

[제340조의5]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O)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다면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이라는 최소재임(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X)

[제341조]

*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목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O)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O)
* 상법 등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명시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X)

[제341조의2]

*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소각을 위해서는 허용되지만, 단주의 처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익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X)

*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가 무상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O)

[제341조의3]

*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質取)를 할 수 있다.	(O)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그 한도에 제한이 없다.	(X)
*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경우에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O)

[제342조]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O)

[제342조의2]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i)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로 인한 때 또는 ii)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X)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O)

[제342조의3]

*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O)

[제343조]

* 주식의 임의소각의 경우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X)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상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X)

[제344조]

*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내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O)
*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O)

[제344조의3]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O)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O)
*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 . 감사의 책임면제(상법 제400조 제1항, 제415조)의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동의도 필요하다.	(O)

[제345조]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O)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	(O)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O)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X)

[제346조]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O)

[제348조]

*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O)

[제350조]

* 주식의 전환은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X)

[제352조]

*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주주명부제도를 두고 있다.	(O)

[제352조의2]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O)

[제353조]

*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설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닐지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O)
*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O)
* 상법 제353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제354조]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O)

[제355조]

*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O)

[제356조]

* 주권은 요식증권이므로 소정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다.	(O)
*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제359조]

* 주권이 도난 . 분실되었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X)

[제360조]

*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	(O)

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당사자간의 약정과 회사에 대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	(X)
*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O)

[제360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O)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O)

[제360조의3]

* 주식교환을 하는 쌍방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제360조의14]

*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채권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X)

[제360조의24]

* 지배주주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O)
*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O)

[제360조의25]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회사이다.	(X)
*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X)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고,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O)

[제360조의26]

*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주식이 이전되는 시점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가 아니라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X)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362조]

*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O)
*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O)

[제363조]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X)
*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O)
*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O)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O)
*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하여야 한다.	(X)
*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O)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4/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X)

[제363조의2]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O)
* 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다만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O)
*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권리이므로, 설령 그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X)

[제364조]

*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O)

[제365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X)

[제366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O)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감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X)
*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O)
*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	(O)

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제366조의2]

*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O)
*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O)

[제368조]

*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때 보통결의 요건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족수를 둘 수 있고, 특별결의 요건의 한도 내에서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다.	(O)
*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X)
*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O)
* 주주는 자유로이 타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X)
*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O)
*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	(O)

할 수 없다.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종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본이나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위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근자에 기술의 발달과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X)
*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주식회사의 주주권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
* 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X)
*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O)
*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O)

[제368조의2]

*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O)
*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X)

[제368조의3]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정관에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서면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된다.	(O)

[제368조의4]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X)

[제369조]

* 상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X)
*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O)
*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O)
*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O)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그 외의 공익권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O)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X)
*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에게는 소수주주권, 제소권 등의 공익권은 인정된다.	(X)
* 甲 회사가 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 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

[제371조]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O)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한다.	(X)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제374조]

*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X)
*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 양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O)
*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O)
*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X)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X)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O)
*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O)
*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X)
* 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O)

[제374조의2]

* 영업양도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O)
*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지만,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O)
*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자기주식의 취득이 되므로 바로 처분하여야 하고, 이사회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X)

[제375조]

* 회사가 그 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한다.	(X)

[제376조]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O)

*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O)
*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X)
*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X)
*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O)
*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O)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데,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제377조]

* 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제379조]

*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제380조]

* 총회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내에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X)
*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무효인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 그 무효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X)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제1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O)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O)
*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확인소송이므로 소송상의 항변으로써도 무효.부존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X)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X)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O)

[제381조]

*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제2관 이사 및 이사회>

[제382조]

* 이사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강행규정	(X)
*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O)
*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제382조의2]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X)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O)
*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
*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에게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X)
*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이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O)

[제382조의3]

*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업무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다른 업무담당이사들의 업무집행까지 감시할 의무는 없다.	(X)
*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
* 회사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정한 업무분장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O)

[제383조]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O)
* 이사를 2명으로 정한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과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 2명의 합의로 결정한다.	(X)

[제385조]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O)
*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O)
*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	(X)
*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로 인한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위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된다.	(X)
* 위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O)
*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X)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제386조]

*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O)
*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O)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O)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X)

[제388조]

*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O)
*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나 법정퇴직금과 달리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보수가 아니다.	(X)
*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O)
*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으로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O)
*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라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O)
*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O)
*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O)
*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이사는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X)
*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불합리한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에 관한 주주	(O)

총회결의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위 이사는 충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O)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O)
*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O)

[제389조]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함이 원칙이나 주주총회에서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O)
*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소멸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X)
*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O)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O)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O)
* 주식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O)
*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X)
* 판례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자기가 가지는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O)
*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계약임에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대표이사와 계약한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은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
*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위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O)
*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O)
*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O)
*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하여야 하지,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할 수는 없다.	(X)

[제390조]

*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O)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정관으로도 단축할 수 없다.	(X)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O)
*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O)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X)

[제391조]

*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O)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 요건을 가중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X)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	(X)

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있다.	(X)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O)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함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X)
*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필요는 없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X)
*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결의 당시가 아니라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제391조의2]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제391조의3]

*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한 경우에 주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비송절차에 의함	(X)

[제393조]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다.	(O)
*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X)
*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	(O)

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O)
*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X)
*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X)
* 주식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상법 제209조 제2항이 준용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O)
*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O)

[제393조의2]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X)
* 이사회는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O)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X)

[제394조]

*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O)
* 법원에서 회사의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그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사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위 임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X)
* 회사가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라도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X)

[제395조]

*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O)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진다.	(O)
*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 상법 제395조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할 수 있다.	(O)
* 회사가 이사의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것을 신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부실 등기의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O)
*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O)
*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O)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X)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행위자가 이사자격만큼은 갖추어야 하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X)
* 회사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O)
*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단순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O)
*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O)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O)

[제396조]

* 회사채권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X)

[제397조]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X)
*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제397조의2]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에 속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O)

[제398조]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X)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X)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O)
* 모회사의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모회사의 이사가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X)
*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재적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O)
*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O)
* 자기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사항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주전원이 동의해서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	(X)
*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O)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면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된다.	(X)
*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승인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O)
*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사후추인 결의를 함으로써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X)

*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승인은 배제하고 있다.	(O)
* 자기거래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나,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O)
*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X)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O)
* 회사는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라는 사실 및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의 부존재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도 증명해야 한다.	(O)
* 이사와 주식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O)
*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당해 이사는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 갑, 을 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O)
*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갑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을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대표이사와 을회사 사이에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O)
*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O)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그 대표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O)

[제399조]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나 사외이사도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X)
*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X)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O)
*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O)

[제40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O)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O)
*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O)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이사의 보수액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제401조]

* 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O)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O)

집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가 그 손해 및 가해 이사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X)

[제401조의2]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O)
* 법인인 지배회사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제402조]

* 비상장회사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소수주주이다.	(O)
*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야 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O)

[제403조]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O)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된다.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나, 만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O)
* 피고는 책임의 추궁을 당하는 이사 등이고 회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	(O)
*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O)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O)
* 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발행주식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X)

[제404조]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로 보아야 한다.	(O)

[제405조]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 대표소송의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X)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X)
* 주주의 대표소송이 확정되더라도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될 뿐 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제407조]

*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X)
*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당행 이사만 피신청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O)
*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상법 제407조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하나이다.	(O)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O)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제408조]

*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X)

*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X)
*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할 수 없다.	(O)
*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제408조의2]

*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O)
*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O)

[제408조의3]

*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X)

[제408조의5]

*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X)
*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O)

[제408조의6]

*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X)

[제408조의7]

*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 집행임원으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청구 받은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O)

[제408조의8]

* 집행임원이 과실로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09조]

*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O)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와 감사의 승낙으)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O)
*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회사는 정관으로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O)
*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O)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O)
*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O)
*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	(O)

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O)
*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O)

[제409조의2]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제410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며, 정관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X)

[제411조]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O)
* 지배인은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X)

[제412조의3]

* 감사는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회소집청구권, 자회사의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O)

[제412조의4]

*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필요하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시총회의 소집은 청구할 수 없다.	(X)

[제412조의5]

*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O)

[제413조의2]

*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 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O)

[제414조]

*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415조]

* 감사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감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O)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	(X)

았다면 감사로서 상법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도 없다.	
*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를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O)
*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415조의2]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O)
*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X)
*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를 두면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함께 설치할 수도 있다.	(X)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4절 신주발행>

[제416조]

* 회시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주의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O)
*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함이 원칙이다.	(O)
*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X)

[제417조]

*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X)
*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X)
* 상법상 액면미달의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제418조]

*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가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O)
* 통상의 신주발행시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O)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O)
*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던 신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소유주식수의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다.	(O)
* 회사는 회사의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O)
*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하려고 하였다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X)
*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증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O)

* 판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 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의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O)
* 판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O)

[제419조]

*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위 기일의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O)

[제420조의3]

*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O)

[제421조]

*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X)

[제423조]

*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일기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X)
* 원칙적으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O)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고, 이 경우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

[제424조]

* 비상장회사에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소수주주이다.	(X)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O)
* 신주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424조의2]

*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제427조]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이면 이미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때에는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O)

[제428조]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된다.	(X)

[제429조]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X)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그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주주나 이사, 감사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O)
*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O)

[제430조]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이전에 신주발행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 그간의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의 행위는 모두 효력을 잃는다.	(X)

<제5절 정관변경>

[제433조]

* 1주의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O)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O)
* 회사설립시의 원시정관과는 달리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	(O)

[제434조]

*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O)
*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X)

[제435조]

* 정관의 변경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제6절 자본금감소>

[제438조]

* 실질적인 자본금감소는 자본금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순자산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O)
* 명목적인 자본금감소는 자본금액만 줄이고 순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키지는 않는 무상감자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 손실보전목적으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음.	(O)

[제439조]

* 자본금감소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감액하거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O)
* (결손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상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O)

[제440조]

*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O)
*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X)

[제442조]

*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X)

[제443조]

*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O)

[제445조]

*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주주 . 이사 . 감사 . 청산인 .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법 제445조의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X)
*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이 있다.	(O)
* 판례는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의 상법상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O)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7조]

*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제447조의3]

*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제447조의4]

*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제449조]

* 이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X)
*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O)

[제449조의2]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O)

[제450조]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총회에서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X)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위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O)

[제451조]

*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원칙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다.	(O)
*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2분의 1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O)

[제458조]

*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 및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X)
* 회사가 준비금 상당의 자산을 반드시 금전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제460조]

*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O)
*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보전에만 충당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O)

[제461조]

*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O)
*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금이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지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O)

[제461조의2]

*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O)

[제462조]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O)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O)
* 준비금은 자본금과 함께 회사의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O)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X)

[제462조의2]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X)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X)

을 초과하지 못한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O)
* 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O)
* 이익배당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자 중요한 권리로,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주주는 상법 제462조의2에 의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X)
*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O)
*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X)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X)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을 하지 못한다.	(X)

[제462조의3]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O)

[제464조]

<주주평등의 원칙>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O)
*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O)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는 30%, 소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대주주가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떼 내어 소주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주평등원칙을 정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O)
*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다만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X)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주주와 사이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해당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X)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X)
*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O)
*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O)
*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O)

[제464조의2]

*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이익배당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O)

[제466조]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O)
*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X)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O)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O)
*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X)
*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열람청구는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O)
*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O)

[제467조]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	(X)

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7조의2]

*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O)
*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회사가 이익공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O)
*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O)
* 회사가 이익공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위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O)
* 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대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X)
* 회사가 주주 아닌 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의 이익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이면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O)
* 회사가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X)
* 회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주주는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8절 사채>

[제469조]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X)

*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O)
* 보증사채는 담보부사채가 아니다.	(O)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	(O)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O)
* 회사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O)

[제476조]

*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X)

[제479조]

*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제480조]

*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480조의2]

*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X)

[제487조]

*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X)

*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판례는 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고 있다.	(X)

[제491조]

*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O)
* 사채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X)

[제492조]

*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O)

[제498조]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결의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X)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은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있다.	(O)

[제513조]

*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O)
*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X)
*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O)
*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O)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O)

[제513조의3]

*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O)

[제516조]

* 전환주식의 전환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 신주가 발행되면 순자산이 증가한다.	(X)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O)
*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O)
*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전환사채 관련 규정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X)
* 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적법한 전환청구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고,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516조의2]

*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O)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O)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O)
*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O)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제516조의6]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X)
* 신주인수권만의 분리 양도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X)

[제516조의11]

*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6개월의 출소기간을 정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O)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O)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O)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 한 무효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O)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X)

<제9절 회사의 해산>

[제517조]

* 주식회사는 영업양도를 하거나 합병할 경우 모두 해산사유가 된다.	(X)

[제518조]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데, 위와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O)

[제519조]

*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X)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X)

[제520조]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상법 제520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X)
*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520조에 따라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상법 제520조에 따른 해산에 관한 청구의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O)

[제520조의2]

*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	(O)

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	
*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제10절 합병>

[제522조]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회사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이므로 영업용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X)
* 합병계약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주주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O)

[제522조의3]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X)
*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X)

[제523조]

* 합병의 대가로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나 그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제527조의2]

*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제527조의3]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X)
* 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X)

[제527조의4]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X)

[제527조의5]

* 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O)

[제529조]

*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O)
*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O)

<제11절 분할>

[제530조의2]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O)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O)

[제530조의3]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도 의결권이 없다.	(X)
*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제530조의9]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O)
* 분할회사, 단순분할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O)
*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X)
*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판례에 의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O)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다.	(O)
*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회사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한다.	(O)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하 '수혜회사'라 한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	(O)
*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제530조의10]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O)

[제530조의11]

*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가 해산하는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X)
*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O)
* 회사 분할의 경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자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는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X)
* 회사분할에서 분할승인결의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분할채무 승계를 정한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를 말하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 분할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다.	(O)

<제12절 청산>

[제531조]

*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O)
* 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X)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X)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제534조]

*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제535조]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에서 제외한다.	(X)
* 청산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3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에 따른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되고, 이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같다.	(X)
* 사채권자는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주주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O)

[제536조]

* 청산인은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회사채권자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X)

[제537조]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538조]

*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539조]

*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없다.	(X)
*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42조]

*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O)
*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상법상 청산회사는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X)
*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O)
*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경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O)
*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은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출자금의 반환 기타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 없다.	(O)
* 주식회사의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O)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

[제542조의3]

* 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X)
* 상장회사가 파산하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 상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정함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취소함.	(X)

[제542조의6]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42조의8]

*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X)

[제542조의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X)

[제5장 유한회사]

[제543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설립이 가능하다.	(O)

[제547조]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O)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O)

[제551조]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중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	(X)

[제552조]

* 유한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제553조]

*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O)

[제555조]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X)

[제556조]

* 유한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과반수,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의하여 완화할 수 없다.	(X)
* 사원의 교체가 가장 자유로운 회사는 유한회사이다.	(X)
* 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559조]

*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제567조]

*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O)
* 정관의 규정을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없다.	(O)
*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X)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보수감액 결의를 한 경우 보수감액의 대상이 된 이사는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O)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O)

[제568조]

* 유한회사의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O)
* 유한회사에도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X)
* 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X)
* 유한회사의 경우 의사기관인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 그리고 감사기관인 감사가 필수기관이다.	(X)

[제570조]

* 유한회사의 감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나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X)

[제573조]

*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O)

[제57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O)

[제585조]

*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O)

[제586조]

*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미리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이 아닌 제3자가 자본금증가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O)

[제604조]

* 주식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회사로도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X)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X)
*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X)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X)

[제607조]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O)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4분의 3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X)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조직변경은 효력이 없다.	(O)

[제6장 외국회사]

[제616조]

*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법규정에 따른 소정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

[제617조]

*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O)

[제619조]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도,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X)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영업소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이어서 검사가 영업소폐쇄명령의 청구를 하였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X)

[제621조]

*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O)

[제7장 벌칙]

[제628조]

* 비록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 . 관여한 사람은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양수가 가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의 제공자에게 주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O)

[제634조의2]

*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이사나 감사는 물론 이익을 수수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O)

[제635조]

*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O)